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50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12. 10.
3. 회 부 일 : 2024.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독립위원회임.

그런데 현행법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청문 없이 임명된 위원장이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국가폭력 진상을 규명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위원회의 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

명을 저지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위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60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안 제4조제4항)

개정안은 대통령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u>대통령이</u> 임명한다. ⑤ (생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u> -----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는 2000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최초 도입된 것으로,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등의 후보자, 국회에서의 선출을 거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

청문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으로 구분됨.

<국회 인사청문 실시 대상>

구 분	대 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	<헌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에 따른 국회에서의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대통령 당선인 지명> 국무총리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 및 개별 법률)	<대통령이 임명하는 해당 공직의 후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통령 당선인 지명> 국무위원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개정안은 이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을 규정한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¹⁾제1호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진실화해위

1)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통해 그 전문성과 공직자 윤리 등 공직 적격성 유무를 검증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진실화해위원회는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률의 제정목적²⁾을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조사기구임.

구체적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사건 및 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을 돕고 있으며, 국가에 대해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 회복조치 등을 권고하고 정부는 해당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는 등 단순한 조사기구로서의 성격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진실규명과 화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장관급)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처장을 지휘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국가재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가지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책임이 크므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고, 과거사 사건 등에 대하여 국가적 화해를 이끄는 위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임명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위원장의 권한>

위원장 업무 권한	근거규정
위원회 대표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업무를 통할	
대통령에 대한 의안제출 건의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위원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유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의결을 한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위원 면직 제청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회 회의 주재	제12조(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사무처장 지휘	제14조(사무처의 설치)
사무처장 임명 관한 제청	
사무처 3급 이상 공무원 임명 제청	
사무처 4급 이하 공무원 임명	
자문기구 구성원 위촉권(위원회 의결 필요)	제1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증인출석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검증실시통보서 발부(위원회 의결 필요)	제24조의3(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24조의7(검증)
공무원 파견근무 요구	제29조(공무원의 파견 등)
과태료 부과	제47조(과태료)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현재 인사청문 실시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장관급 기관장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와 같이 임명에 있어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주요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이 존재함.³⁾

둘째, 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기간이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에 따른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2024년 12월 10일 임명된 현 위원장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5년 11월 26일까지인 관계로,⁴⁾ 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후임 위원장을 임명할 필요가 없어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보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임기 및 위원회 존속기한 등 비교>

현 위원장 임기	위원회 조사기한	위원회 존속기한
<u>2025. 11. 26.</u> 까지 재임 가능 (2024. 12. 10. 임기 시작, 임기 2년)	2025. 5. 26.	<u>2025. 11. 26.</u>

3) 차관급 기관장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도 「국회법」 및 「원자력안전법」에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4)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2021.5.27.) 이후 3년간(2024.5.26.까지) 진실규명활동을 하되(제25조제1항), 조사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의 범위(2025.5.26.까지)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였고, 조사기간 종료 이후 6개월간의 종합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2025년 11월 26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예정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폭력 등에 대한 진실규명 및 피해자·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다른 유사한 성격의 한시적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으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